●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674, 2696, 2723

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21. 8. 18.

다. 회 부 일 : 2021. 8. 19.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1)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4,29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0.17%)이 감액되었음.

○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조 78억원에서 25억원 감소(△0.25%)한 1조 53억원임.

〈여성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제2회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754,002	1,429,201	1,431,700	△2,499(△0.17)
일반회계			1,736,155	1,418,969	1,421,468	△2,499(△0.18)
	세외수입	경상적	667	564	564	-
		임시적	68,834	73,026	73,026	-
	지방교부세		-	-	-	-
	국고보조금 등		1,269,783	1,005,290	1,007,789	△2,499(△0.25)
	지방채		23,5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3,371	340,089	340,089	-
균형발전특별회계			17,847	10,232	10,232	-
	국고보조금 등		17,847	10,232	10,232	-

(2)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4,075억 8천 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08억 4천 5백만원(0.4%)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증액이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3조 6582억 3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08억 4천 5백만원(0.6%)이 증액되었음.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968,566	5,407,585	5,386,740	20,845(0.4)
일반회계			3,485,697	3,729,637	3,708,792	20,845(0.6)
	세외수입	경상적	14,005	14,970	14,970	-
		임시적	40,433	39,416	39,416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4	4	-
	지방교부세		170	80	80	-
	국고보조금 등		3,419,797	3,658,239	3,637,394	20,845(0.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4,527	14,527	-
	지방채		11,293	2,400	2,4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869	1,677,948	1,677,948	-
	세외수입	경상적	562	189	189	-
		임시적	2,342	2,784	2,78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59	159	-
	국고보조금 등		752,382	830,940	830,94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7,582	843,876	843,876	-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992억 5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26억 3천 9백만원(4.4%)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2,118억 2천 1백만원에서 126억 3천 9백만원 증가(6.0%)한 2,244

억 6천만원임.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43,338	299,259	286,620	12,639(4.4)
일반회계		243,338	299,259	286,620	12,639(4.4)
세외수입	경상적	40,791	39,239	39,239	-
	임시적	25,111	26,041	26,041	-
지방교부세		4,240	699	699	-
국고보조금 등		172,238	224,460	211,821	12,639(6.0)
지방채		-	8,200	8,2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7	621	621	-

나. 세출예산

(1)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조 8,5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원(△0.48%)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예산현액)	2021년도 제2회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211,188	2,853,897	2,867,642	△13,745(△0.48)
행정운영경비	709	786	786	-
재무활동	4,347	3,421	3,421	-
사업비	3,206,132	2,849,690	2,863,435	△13,745(△0.48)

(2)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7,778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11억 9천 5백만원(0.9%)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8,248,883	8,777,894	8,696,699	81,195(0.9)
행정운영경비	697	689	689	-
재무활동	994,813	1,004,278	943,902	60,376(6.4)
사업비	7,253,373	7,772,927	7,752,108	20,819(0.3)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511억 6천 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1억 9백만원(3.7%)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01,065	651,163	628,054	23,109(3.7)
행정운영경비	7,897	8,214	8,254	△40(△0.5)
재무활동	794	1,642	1,642	-
사업비	592,373	641,307	618,158	23,149(3.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의 확보, 선별검사소의 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21년 7월 23일)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2조 8,539백만원(감 137억원), 복지정책실 8조 7,779억원(증 812억원), 시민건강국 6,511억원(증 231억)이 제출되었음.

○ 실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제출사유를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코로나 19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한시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36억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정책실은 생계급여(149억), 긴급복지지원사업(169억), 자활근로사업(31억)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제출하였으며 시민건강국도 국비매칭을 위하여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20억원, 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 11억 8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또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집행률 추이를 고려한 감액안을 제출하였음.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을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국비보조금의 감액변경으로 인해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에서 3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69억원 등 총 102억원이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복지정책실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감액 6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비 분담금 감액 35억원을 포함하여 총 6개사업 118억원이 시민건강국의 경우 1개 사업 3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여성가족정책실

1.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4,292억원으로 제1차 추경안에서 13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던 것을, 제2회 추경을 통해 24억 9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18억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40억원) 사업은 감액하고, 신규사업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으로 33억원을 증액한 것임.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본예산) (A)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D=B+C)	21년 대비 증감률 ((D-C)/C)	20년 대비 증감률 ((D-A)/A)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B)	제2회 기정예산 (C)			
합 계	1,754,002	13,468	△2,499	1,431,700	1,429,201	△0.17	△18.5
일반회계	1,736,155	13,468	-	1,421,468	1,418,969	△0.17	△18.3
세외수입 경상적	667	-	-	564	564	-	△15.4
세외수입 임시적	68,834	-	-	73,026	73,026	-	6.9
지방교부세	-	-	-	-	-	-	-
국고보조금 등	1,269,783	13,229	△2,499	1,007,789	1,005,290	△0.25	△20.8
지방채	23,500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3,371	239	-	340,089	340,089	-	△8.9%
균형발전특별회계	17,847	-	-	10,232	10,232	-	△42.7%
국고보조금 등	17,847	-	-	10,232	10,232	-	△42.7%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조 8,538억 9천 7백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에 비해 3,572억 9천 1백만원(△11.1%)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137억 4천 5백만원(0.48%)이 감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예산현액) (A)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D=B+C)	21년 대비 증감률 ((D-C)/C)	20년 대비 증감률 ((D-A)/A)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B)	제2회 기정예산 (C)			
합 계	3,211,188	67,395	△13,745	2,867,642	2,853,897	△0.47	△11.1
행정운영경비	709	-	-	786	786	-	10.9
재무활동	4,347	1,014	-	3,421	3,421	-	△21.3
사업비	3,206,132	66,381	△13,745	2,863,435	2,849,690	△0.48	△11.1

2)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추경안은 보육담당관이 2건(136억 2천 2백만원)으로 감액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아이돌봄담당관 2건(11억 9천 6백만원) 감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건(2억 7천 5백만원), 권익보호담당관 2건(7천만원) 순으로 감액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담당관은 14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총 5건의 추경편성 사업 중 유일한 증액사업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5억 7천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제1차 추경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200억원) 등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7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46억원) 등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 등 67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금번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늘어난 것이라 할 것임.

<표> 여성가족정책실 각 과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예산현액) (A)	제1회 추경예산 증감률 (B)	제2회 기정예산 (C)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률 (D)	제2회 추경예산(안) (E=C+D)	기정 예산 대비 증감률 (D/C)	20년 예산 대비 증감률 ((E-A)/A)
총 계	3,211,188	(x13,229) 67,395	(x1,018,021) 2,867,642	(x2,499) △13,745	(x1,015,521) 2,853,897	△0.47	△11.12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91,196	(x2,855) 5,751	(x12,994) 65,585	(x-) △275	(x12,994) 65,310	△0.41	△28.38
권익보호담당 관	41,949	(x396) 1,193	(x14,690) 43,827	(x-) △70	(x14,690) 43,757	△0.16	4.31
보육담당관	(x632,949) 1,970,013	(x5,809) 38,793	(x622,951) 1,896,960	(x△5,800) △13,622	(x617,151) 1,883,338	△0.71	△4.40
가족담당관	931,772	(x4,028) 15,599	(x322,895) 665,735	(x3,300) 1,417	(x326,195) 667,152	0.21	△28.39
아이돌봄 담당관	175,075	(x149) 5,888	(x40,715) 164,602	△1,196	(x40,715) 169,294	△0.68	△3.30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x3,573) 24,490	(x△9) 172	(x3,747) 24,332	(x-) -	(x3,747) 24,332	-	△0.64
아동복지센터	(x28) 714	(x-) -	(x28) 714	(x-) -	(x28) 714	-	-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총 18개 사업, 137억 4천 5백만원 중 1건을 제외한 17개 사업 모두 감액 편성되었음.

○ 감액사업 17건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건은 대상아동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건이고, 나머지 15건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용예상 시비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번	세부사업명	2020예산 (예산현액) (A)	제1회 추경예산 증감률 (B)	제2회 기정예산 (C)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률 (D)	제2회 추경예산(안) (E=C+D)	기정 예산 대비 증감률 (D/C)	20년 예산 대비 증감률 ((E-A)/A)
총 계		3,211,188	(x13,229) 67,395	(x1,018,021) 2,867,642	(x2,499) △13,745	(x1,015,521) 2,853,897	△0.47	△11.1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91,196**	**(x2,855) 5,751**	**(x12,994) 65,585**	**(x-) △275**	**(x12,994) 65,310**	**△0.41**	**△28.38**
1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862	-	1,968	△100	1,868	△5.08	0.32
2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100	-	92	△42	50	△45.62	△50
3	안심귀가스카우트	5,691	-	5,619	△80	5,539	△1.41	△2.67
4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132	-	269	△40	229	△14.89	73.48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420	-	295	△12	283	△4.06	△32.61
권익보호담당관		**41,949**	**(x396) 1,193**	**(x14,690) 43,827**	**(x-) △70**	**(x14,690) 43,757**	**△0.16**	**4.31**
6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73	-	126	△40	86	△31.74	17.8
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x120) 120	0	(x125) 195	△30	(x125) 165	△15.38	△37.5
보육담당관		(x632,949) 1,970,013	**(x5,809) 38,793**	**(x622,951) 1,896,960**	**(x△5,800) △13,622**	**(x617,151) 1,883,338**	**△0.71**	△4.40
8	특화보육 지원(자체)	52,424	268	42,919	△2,494	40,425	△5.81	△22.89

연번	세부사업명	2020예산 (예산현액) (A)	제1회 추경예산 증감률 (B)	제2회 기정예산 (C)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률 (D)	제2회 추경예산안 (E=C+D)	기정 예산 대비 증감률 (D/C)	20년 예산 대비 증감률 ((E-A)/A)
9	가정양육수당 지원	(x108,647) 87,872	-	(x94,156) 174,712	(x△1,800) △3,340	(x92,356) 171,372	△1.91	95.02
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x346,647) 297,286	-	(x342,122) 634,826	(x△4,000) △6,935	(x338,122) 627,891	△1.09	111.21
11	어린이복합문 화시설 건립	858	-	858	△853	5	△99.4	△99.42
가족담당관		**931,772**	**(x4,028) 15,599**	**(x322,895) 665,735**	**(x3,300) 1,417**	**(x326,195) 667,152**	**0.21**	**△28.39**
1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86,660	4,573	97,759	△1,100	96,659	△1.12	11.5
14	출생축하용품 지원	6,472	-	4,745	△307	4,438	△6.47	△31.42
15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155	0	4,557	△52	4,505	△1.14	42.78
16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	0	0	(x3,300) 3,576	(x3,300) 3,576	-	-
17	한부모가족복 지시설 운영지원	8,913	0	9,998	△700	9,298	△7.00	4.31
아이돌봄담당관		**175,075**	**(x149) 5,888**	**(x40,715) 164,602**	**△1,196**	**(x40,715) 169,294**	**△0.68**	**△3.30**
18	우리동네키움 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x1,826) 15,119	-	(x2,893) 26,933	(x-) △1,091	(x2,893) 25,842	△4.05	70.92
19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x-) 4,817	-	(x65) 4,030	(x-) △105	(x65) 3,925	△2.61	△18.51
외국인다문화담 당관		**(x3,573) 24,490**	**(x△9) 172**	**(x3,747) 24,332**	**(x-) -**	**(x3,747) 24,332**	**-**	**△0.64**

연번	세부사업명	2020예산 (예산현액) (A)	제1회 추경예산 증감률 (B)	제2회 기정예산 (C)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률 (D)	제2회 추경예산(안) (E=C+D)	기정 예산 대비 증감률 (D/C)	20년 예산 대비 증감률 ((E-A)/A)
아동복지센터		(x28) 714	(x-) -	(x28) 714	(x-) -	(x28) 714	-	-

나. 복지정책실

1.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4,075억 8천 5백만원으로 제1차 추경안에서 415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던 것을, 제2차 추경을 통해 208억 4천 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 세입 증액은 국고보조금 208억 4천 5백만원으로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이 증액된 것임.

<표>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A)	2021년도			추경 예산안 (E=B+C+D)	'20년 대비 증감 (E-A)		'21년 기정예산 대비 증감 (E-D)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B)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C)	기정예산 (D)					
합 계	4,968,566	41,541	20,845	5,345,199	5,407,585	439,019	(8.8)	62,386	(1.2)
일반회계	3,485,697	31,162	20,845	3,677,630	3,729,637	243,940	(7.0)	52,007	(1.4)

구분			2020예산 (A)	2021년도			추경 예산안 (E=B+C+D)	'20년 대비 증감 (E-A)	'21년 기정예산 대비 증감 (E-D)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B)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C)	기정예산 (D)			
	세외수입	경상적	14,005	-	-	14,970	14,970	965 (6.9)	0 (0.0)
		임시적	40,433	-	-	39,416	39,416	△1,017 (△2.5)	0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4	4	4 (100)	0 (0.0)
	지방교부세		170	-	-	80	80	△90 (△52.9)	0 (0.0)
	국고보조금 등		3,419,797	31,162	20,845	3,606,232	3,658,239	238,442 (7.0)	52,007 (1.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14,527	14,527	14,527 (100)	0 (0.0)
	지방채		11,293	-	-	2,400	2,400	△8,893 (△78.7)	0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869	10,379	-	1,667,569	1,677,948	195,079 (13.2)	10,379 (0.6)
	세외수입	경상적	562	-	-	189	189	△373 (△66.4)	0 (0.0)
		임시적	2,342	-	-	2,784	2,784	442 (18.9)	0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159	159	159 (100)	0 (0.0)
	국고보조금 등		752,382	15	-	830,925	830,940	78,558 (10.4)	15 (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7,582	10,363	-	833,513	843,876	116,294 (16.0)	10,363 (1.2)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7,778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존 '21년도 예산보다 2,803억 3천 7백만원(3.3%)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A)	2021년도			추경 예산안 (E=B+C+D)	'20년 대비 증감 (E-A)	'21년 대비 증감 (E-D)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B)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C)	기정 예산 (D)			
합 계	8,248,883	199,142	81,195	8,497,557	8,777,894	529,011(6.4)	280,337(3.3)
행정운영경비	697	-	-	689	689	△8(△1.1)	0(0.0)
재무활동	994,813	99,716	60,376	844,186	1,004,278	9,465(1.0)	160,092(19.0)
사업비	7,253,373	99,426	20,819	7,652,682	7,772,927	519,554(7.2)	120,245(1.6)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과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727억원), 지역돌봄복지과(169억원), 자활지원과(25억원), 인생이모작지원과(13억원), 어르신복지과(△37억원), 장애인복지정책과(△85억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각 과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D)	추경 예산(안) (E=B+C+D)	('20대비) 증감률 (E/A)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E/B)
계	8,248,883	8,497,558	199,142	81,195	8,777,894	6.4%	3.3%
복지정책과	3,754,465	3,696,412	111,712	72,689	3,880,813	3.4%	5.0%

구분	2020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D)	추경 예산(안) (E=B+C+D)	('20대비) 증감률 (E/A)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E/B)
지역돌봄복지과	349,461	304,552	21,186	16,946	342,684	△1.9%	12.5%
어르신복지과	2,585,962	2,903,144	3,899	△3,700	2,903,343	12.3%	0.01%
인생이모작지원과	331,941	306,606	2,481	1,328	310,415	△6.5%	1.2%
장애인복지정책과	260,710	283,070	4,558	△8,489	279,139	7.1%	△1.4%
자활지원과	197,116	183,619	6,074	2,422	192,115	△2.5%	4.6%

3) 세부사업별

○ 복지정책실에서는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해 5개 사업 97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감액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 등으로 15개 사업 162억원을 감액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세부사업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D)	추경 예산(안) (E=B+C+D)	('20대비) 증감률 (E/A)	기정예산 대비 증감 (E/B)
총계		8,248,883	8,497,558	199,142	81,195	8,777,894	6.4%	3.3%
복지정책과		3,754,465	3,696,412	111,712	72,689	3,880,813	3.4%	5.0%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817,012	870,722	-	14,868	885,590	8.4%	1.7%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432	541	-	△40	501	16.0%	△7.4%

3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50,000	12,837	57,800	60,377	131,014	△47.6%	920.6%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2,466	18,679	77	△2,516	16,240	△27.7%	△13.1%
지역돌봄복지과		349,461	304,552	21,186	16,946	342,684	△1.9%	12.5%
5	긴급복지지원사업	50,766	30,034	-	16,946	46,980	△7.5%	56.4%
어르신복지과		2,585,962	2,903,144	3,899	△3,700	2,903,343	12.3%	0.01%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91,057	204,998	-	△3,500	201,498	5.5%	△1.7%
7	노인지원주택 운영1)	617	942	-	△200	742	20.3%	△21.2%
인생이모작지원과		331,941	306,606	2,481	1,328	310,415	△6.5%	1.2%
8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79,963	160,089	608	2,103	162,800	△9.5%	1.7%
9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3,865	16,964	96	△198	16,862	21.6%	△0.6%
10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3,734	10,497	232	△527	10,202	△25.7%	△2.8%
11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733	940	-	△50	890	21.4%	△5.3%
장애인복지정책과		260,710	283,070	4,558	△8,489	279,139	7.1%	△1.4%
1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3,587	109,514	-	△6,657	102,858	△0.7%	△6.1%
13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025	1,200	-	△225	975	△4.9%	△18.8%
14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1,285	1,209	-	△222	987	△23.2%	△18.4%
15	발달장애인사서보조 지원사업	684	784	-	△477	307	△55.1%	△60.8%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92	2,477	-	△193	2,284	76.8%	△7.8%
1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09	1,736	70	△715	1,091	20.0%	△37.2%
자활지원과		197,116	183,619	6,074	2,422	192,115	△2.5%	4.6%
18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594	609	-	△209	400	△32.7%	△34.3%
19	자활근로사업 지원	106,828	97,370	4,862	3,137	105,369	△1.4%	8.2%

20	희망키움통장 II	7,162	6,123	△1,448	△506	4,169	△41.8%	△31.9%

다. 시민건강국

1.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992억 5천 9백만원으로, 시민건강국은 1차 추경을 통해 108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차 추경안에서는 126억 3천 9백만원(4.4%)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시민건강국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029억 5백만원에서 126억 3천 9백만원 증가(6.0%)한 2,244억 6천만원임.

<표>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추경 예산안	20년 대비 증감 (비율)	21년 대비 증감 (비율)
			제1회 추경 예산(증감)	제2회 추경 예산(증감)	기정예산			
합 계		243,338	10,858	12,639	275,762	299,259	55,921 (23.0)	12,639 (4.4)
일반회계		243,338	10,858	12,639	275,762	299,259	55,921 (23.0)	12,639 (4.4)
세외수입	경상적	40,791	1,942	-	37,297	39,239	△1,553 (△3.8)	- -
	임시적	25,111	-	-	26,041	26,041	929 (3.7)	- -
지방교부세		4,240	-	-	699	699	△3,541 (△83.5)	- -

1) 2020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업으로 추진(사업비 617백만원) 후 2021년 사업 분리

국고보조금 등	172,238	8,616	12,639	202,905	224,460	52,222 (30.3)	12,639 (6.0)
지방채	-	-	-	8,200	8,200	8,2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7	-	-	621	621	△336 (△35.2)	- -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511억 6천 3백만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보다 231억 9백만원(3.7%)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4천만원(0.5%)의 감액이 있었고, 사업비에서 231억 4천 9백만원(3.7%)의 증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추경 예산안	20년 대비 증감 (비율)	21년 대비 증감 (비율)
		제1회 추경 예산(증감)	제2회 추경 예산(증감)	기정예산			
합 계	601,065	54,372	23,109	573,681	651,163	50,098 (8.3)	23,109 (3.7)
행정운영경비	7,897	12	△40	8,242	8,214	316 (4.0)	△40 (△0.5)
재무활동	794	1,640	-	2	1,642	848 (106.8)	- (0.0)
사업비	592,373	52,721	23,149	641,307	641,307	48,934 (8.3)	23,149 (3.7)

○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추경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7개 과 가운데 3

개 과(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지원과)에서 각각 추경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북병원에서 추경 사업을 편성하였음.

<표> 시민건강국 각 과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 예산(C)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D)	추경 예산(안) (E=B+C+D)	(20년 대비) 증감률	기정예산 대비증감
계	601,065	573,681	54,372	23,109	651,163	8.3	3.7
보건의료정책과	230,327	224,263	17,845	△541	241,567	4.9	(△0.2)
감염병관리과	149,076	130,560	10,422	22,935	163,917	10.0	16.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	1,065	17,171	1,188	19,424	-	6.5
보건환경연구원	21,670	17,086	2,282	△95	19,273	(△11.1)	(△0.5)
서북병원	13,860	12,825	3,371	△379	15,817	14.1	(△2.3)

2) 증액사업

○ 증액 편성한 과는 총 2개과로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지원과로 나타나고 있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229억 3천 5백만원, 코로나19 대응지원과에서는 11억 8천 8백만원의 증액을 편성함.

○ 증액 주요 사유로는 정부 제2차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으로 총 3개사업에서 241억 2천 3백만원의 증액을 편성함.

<표>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	기정예산 (A)	증 감 (B)
감염병관리과		(x74,178) 163,917	(x62,710) 140,982	(x11,468) 22,935
1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6,624) 33,249	(×6,157) 12,314	(×10,468) 20,935
2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000) 2,000	(×-) -	(×1,000) 2,000
코로나19대응지원과		(x1,794) 19,424	(x606) 18,236	(x1,188) 1,188
3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1,188) 1,188	(×-) -	(×1,188) 1,188

3) 감액사업

○ 감액 편성한 과는 보건의료정책과로, 총 4개 사업에서 5억 4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북병원에서 각각 4개 사업 9천 5백만원, 3개 사업 3억 7천 9백만원의 감액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감액의 주요 사유는 시비사업 감액이 총 10개 사업 9억 7천 5백만원,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감액 1개 사업 3천 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	기정예산 (A)	증 감 (B)
보건의료정책과		(x74,850) 241,567	(x74,850) 242,108	(x-) △541
1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	80	△80
2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353	403	△50
3	대사증후군 관리	2,896	3,227	△331
4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276	356	△80
보건환경연구원		(x1,972) 19,273	(x1,989) 19,368	(x△17) △95
5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경상)	(×94) 187	(×111) 226	(×△17) △39
6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718	3,728	△10
7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585	599	△14
8	가락119안전센터-강남 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33	65	△31
서북병원		(x388) 15,817	(x388) 16,196	(x-) △379
9	서북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98	137	△39
10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992	1,292	△300
11	기본경비	2,283	2,323	△40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여성가족정책실

1.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1)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숲과 연계한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서울혁신파크 내(은평구 통일로 684)에 건립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녹번동 7번지)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연면적 5,506㎡)** / 사업면적 2,788㎡
용 도	**문화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주요공간	기획 · 상설 전시체험실, 예술실험실, 관찰탐구실, 상상공방, 야외놀이숲, 모험가의 탐험, 영유아놀이실, 편의공간 등
사업기간	2015~2025년
총사업비	422억원 (건축비등 309억원, 시유지 11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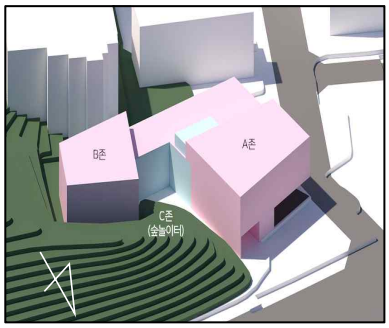

〈조 감 도〉

- `21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8억 5,750만원으로, 추경안은 토지매입비 등 8억 5,347만원을 감액(99.5% 감소)하여 403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4,029	(x-) 857,500	(x-) △853,471	
사무관리비	(x-) 1,902	(x-) 5,500	(x-) △3,598	◦ 기집행측량비 제외 △3,598천원
시설비	(x-) 2,127	(x-) 4,000	(x-) △1,873	◦ 기집행측량비 제외 △1,873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x-) 0	(x-) 848,000	(x-) △848,000	◦ 토지매입비 △ 848,000천원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2014년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2017년에 시설 건립을 위한 단독 추진계획을 세웠음. 이에 따라 2018년 타당성 조사 수행 중 계획을 변경(2018년, 1차)하였으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기술용역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차 변경(2019년, 2차)하고 2019년에 서울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승인을 완료하였음.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추진 경과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사회혁신담당관) : **'14. 7. 2.**

- 서울혁신파크 마스터플랜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신축 포함, '17년도 설계 실시

○ **건립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서울연구원) **실시 : '15. 7.~12.**

➡ 최종보고시 **다양한 의견수렴**, **자연친화·체험놀이 강화** 필요 의견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티팟) **실시 : '16. 6.~10.**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수립 : '17. 1.15.**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및 중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5.~'18.2.**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변경(1차) : ’18. 1.26.

- 사업부지 대지경계 설정, 건축면적 증가, 야외숲 조성계획 구체화 등

○ 건축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 : ’18. 9.~12.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변경(2차) : ’19. 3.27.

- 부지내 경사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야외숲 면적 축소 등

○ 시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 ’19. 5.30.

- 운영적자 최소화, 교통·주차·안전대책, 옥상녹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조건부 승인) : ’19. 7.11.

- 건축설계시 비오톱·경사도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 설계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 ’19. 9. 6.

○ 콘텐츠 기획 학술용역 추진 및 건립자문위원회 자문 : ’20. 3.~

- 예술과 자연을 테마로 융복합적 경험 및 자발성을 살리는 방향의 공간기획

○ 관련부서 자문 및 은평구 총괄건축가 의견(시 도시관리과, 은평구) : ’20. 9.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임야 제외 필요, 국유지 매입 및 접도요건 충족 필요

※ 은평구 재무과 의견(당초 ’19.8.19.) 국유지(도로) 무상사용 가능 ⇒ 취득시에만 1년 무상사용 가능

○ 설계 의뢰 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시공간개선단) : ’20. 8.~9.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시행(‘19.12.19)으로 설계의뢰 前 공공건축 사전검토 법정 필수사항

➡ 설계공모 전 사업범위 확정, 전면부 국유지 확보(509㎡) 필요

➡ 혁신파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시기 변경 : ’20.10월 ⇒ ’21.10월

※ 혁신파크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조성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2㎞ 이상 거리도 단일 교지 인정) 선행이 필요, 교육부『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 중(10월 입법예고 예정)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변경(3차) : ’20.10.14.

-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임야 제외, 국유지 매입,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 국유지 매입 위한 현황측량(2회) : ’21. 1~3월

○ 그러나 2019년 12월 19일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가 의무화되어,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접도요건 충족을 위해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2020년, 3차)하고, 2020년 본예산으로 국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8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연도별 용지매입비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산출근거
합 계	4,309	848	1,742	1,719	
용 지 비	4,240	848 (※ 계약금 20%)	1,696 (※ 잔금의 1/2)	1,696 (※ 잔금의 1/2)	'20년 공시지가 5,099,000원 × 509㎡ × 1.634 (※ 예상가격)
할부이자	69	-	46	23	2회 분납, 이율 코픽스 잔액기준 분기별 금리(현 1.35%)

○ 금번 추경안은 신임시장의 서울혁신파크 전면 재조성 공약에 따라 기존 계획을 근거로 편성한 국유지 매입 분할금 8억 4,800만원 및 토지매입을 위해 기집행한 측량비(2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 **추진단계(공공개발기획단)**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 '21. 4. 7.

- 공약사항 :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 서울혁신파크 전면 재조성을 통해 불광역세권을 서북권 新생활경제 중심지로 육성

세대불문행복타운(가칭, 허브형 종합복지관 개념) + 상업문화컴플렉스 + 장기전세주택

○ **혁신파크 부지활용 추진방안 시장보고** : '21. 6. 16.

○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계획 : ’21. 7. 23.**

○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 ’21. 9월초**(예정)

□ **향후계획(공공개발기획단)**

○ **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 ’22년**

○ **사업추진 절차**(기본·실시설계 등) **이행 : ’23년~24년**

○ **조성공사 : ’25년~’27년**

○ 금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등의 감액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이라는 검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그러나 이미 여성가족정책실은 꿈나무마을 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2]이 2020년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결과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총 예산 101억 8천 8백만원 중 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경우, 관련한 절차와 공정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세심한 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 총 예산101억 8천 8백만원 중 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반납함 (국 2,449 시 7,739)

의2[3]를 근거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을 통한 실질적 경제적 혜택으로 출생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전액시비 사업임.

- `21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47억 3,500만원으로, 추경안은 낙찰차액 및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변경계약 금액 3억 718만원을 감액(6.5% 감소)한 44억 3,78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0.1.9>

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3, 2020.1.9>

1.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다만,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의료기관,보건기관 발급)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8.5.3>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1. 출생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생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생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제목개정 2020.1.9]

<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4,437,824	(x-) 4,745,000	(x-) △307,176	
사무관리비	(x-) 125,000	(x-) 125,00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	(x-) 4,312,824	(x-) 4,620,000	(x-) △307,176	◦ 낙찰차액 : △78,850천원 ◦ 출산축하용품 계약금액 △228,326천원 - 출생아수 감소: 53,700명 -〉 51,000명

○ 금번 추경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미리 감액하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된다고 할 것임.

<표> 출산축하용품 계약금액 변경 세부 내역

구분	공급단가 (원)	최초계약		변경계약		차액(천원)
		수량(개)	금액(천원)	수량개)	금액(천원)	
물품구성단가	79,565	53,700	4,272,650	51,000	4,057,824	△214,826
인쇄비등단가	800	53,700	42,960	51,000	40,800	△2,160
포장비단가	1,800	53,700	96,660	51,000	91,800	△4,860
배송비단가	2,400	53,700	128,880	51,000	122,400	△6,480
합계	84,565		4,541,150		4,312,824	△228,326

○ 특히 금번 추경안은 ①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 지급(8,557억원[4]), ②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③ 방역 대응체계 강

4) 정부 가내시 전 추정치

화(1,493억 원)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최초 사업 시작 이후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금번 감추경과 마찬가지로 예산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출생아동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사유
2020	6,471,813	4,739,393	22,586	1,709,835	- ′19년 출생축하용품 계약기간(′19.4~′20.3)에 의해 ′19.12, ′20,1/4분기 약 18,000명분 지원 예상하였으나 출생아수 감소(16,098명 지원)으로 인해 사고이월 금액 2,198백만원 중 847백만원 불용 - ′20년 출생축하용품 계약 낙찰차액 734백만원 발생 - ′20.4~12월 36,360명 지원 예상하였지만, 출생아수 감소(34,903명 지원)으로 인해 107백만원 불용
2019	7,875,949	4,566,945	2,197,713	1,111,291	- 출산축하용품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2018	4,125,000	2,130,074	1,182,949	811,976	- 출산축하용품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3)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신규)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지원으로 편성된 증액 사업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1,000원(시구비 5:5)

* 학기 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 **(사업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 **(추진일정)**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계획 마련·안내(~'21. 7월 말), 급식지원 대상아동 발굴 및 지원(9월 초~)

- 추경안은 국비 33억 48만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7,552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3,300,480) 3,575,520	(x-) 0	(x3,300,480) 3,575,52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3,300,480) 3,575,520	(x-) 0	(x3,300,480) 3,575,520	◦ (국비) 한시지원 급식비 - 6,000원×1식×90일×6,112명 ◦ **(시비) 급식비 1천원 추가지원** - 1,000원×1식×90일×6,112명*50%

○ 3개월 한시로 지원되는 금번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국비로 2021년 보건복지부 권장단가 6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33억 48만원과, 추가

로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7월 1일부터 7천원으로 인상[5]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급식단가에 맞춰 시비 보전분 2억 7,50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보건복지부 보조금 가내시 내역

(단위 : 원)

보조금합계	보조금 세부내역			
	국비지원금 (1식당6,000원)	시비추가분 (1식당1,000원)	시비 (500원)	구비 (500원)
3,850,560,000	3,300,480,000	550,080,000	275,040,000	275,040,000

○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며, 법률상 요건 외에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 ③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는 한시성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로 생활고를 겪는 빈곤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및 성장이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바,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동 추경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아직까지 예측되지 않는 바, 3개월의 한시지원 이후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급식 인상분 1천원은 시구비 5:5로 분담

4)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음. 2021년도 3/4 분기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2021년도 예산집행 30%미만 사업 현황

('21. 7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여성가족정책실 합계(201개)	**2,880,084**	**1,851,351**	**64.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계(21개)	**65,655**	**45,296**	**69.1%**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217	32	14.7%
안심이앱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20	0	0%
권익보호담당관 소계(47개)	**43,827**	**32,122**	**73.3%**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69	18	26.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275	80	29.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124	0	0%
보육담당관 소계(32개)	**1,896,959**	**1,253,539**	**66.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스크 지원	1,409	0	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2	0	0%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858	4	0.5%
국고보조금 반환	314	0	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40,000	10,150	25.4%
가족담당관 소계(50개)	**666,124**	**391,985**	**58.8%**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600	850	23.6%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	98	18	18.4%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126	0	0%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지원	14	0	0%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운영지원	27	0	0%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아동시설)	9	0	0%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5	5	20%
국고보조금 반환	1,154	272	23.6%
아이돌봄담당관 소계(30개)	**182,473**	**108,222**	**59.3%**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설치비 지원)	90	0	0%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190	0	0%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108	0	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기자재비 지원)	400	0	0%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	5	0	0%
여성프리랜서의 돌봄고충해결 관련 실태조사	50	0	0%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5,478	903	16.5%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359	420	12.5%
국고보조금 반환	1,460	0	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계(18개)	**24,332**	**19,847**	**81.6%**
외국인유학생 관련 코로나19 대응	240	65	27.1%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108	10	9.3%
국고보조금 반환	292	0	0%
아동복지센터 소계(3개)	**714**	**340**	**47.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56	10	17.9%

나. 복지정책실

1.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매칭시비 및 물품지원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금

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1년 기정예산은 706억 3천 7백만원이며, 603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한 1,310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사유
계	(x-) 131,013,598	(x-) 70,637,000	(x-) 60,376,598	
기금 전출금	(x-) 131,013,598	(x-) 70,637,000	(x-) 60,376,598	◦ 생활지원비 매칭시비 25,377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부족분(20,000백만원) - 생활치료센타 격리시설 운영 등(15,000백만원)

○ '21년 7월 이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7월 코로나 확진자수 및 자가 격리자수는 1~6월 평균 대비 각 181% 및 119.7% 증가하였음.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

<표>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현황

구 분	'21.1월	'21.2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21.1~6월평균	21.7월
코로나19 확진자수	4,873명	4,060명	3,898명	5,484명	5,781명	5,917명	5,154명	**14,506명**
코로나19 자가격리자수	17,272명	20,681명	22,625명	33,455명	33,155명	30,894명	26,347명	**57,880명**

○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추가 편성 사유는 크게 '생활지원비 매칭 시비'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로 볼 수 있음.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소요예산 253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6]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임.

- 세부 추경편성 사유는 정부 생활지원비 국고보조금 857억 8천 3백만원 교부결정 통보(질병관리청, 2021.7.27)에 따라 시비 매칭분 중 서울시 추경에 기 확보된 317억 5천 5백만원 외 253억 7천 7백만원을 추가 확보 하는 사항임. 즉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기존 내시액(A)	변경 내시액(B) ('21.7.27.)	증감액(C=B-A)
국비(서울)	47,680	133,463	85,783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200억원)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부족분' 으로 200억이 편성되었음. 본 예산은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 받는 자에게 가구당 격리물품을 지원

---

6)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만원 상당 물품 또는 현금 선택) 하는 것이며, ‘21년 7월말까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자에 대한 물품지원 실적은 174,077건, 174억 3천만원임.

<표>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 물품지원

구분	코로나 19 물품지원 등
지원대상	○ 물품 지원 :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지원기준	○ 코로나 관련 지원으로 별도 세부 지원기준 없음
지원내용	○ 물품지원 :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생수, 쌀, 라면 등 식품 및 위생용품)

- 집행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여 물품지원 신청자 수가 월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총 407억 5천 7백만원 중 집행 잔액은 175억 9천 8백만원임. 이중 물품지원비로 지출 가능한 예산은 118억 4천 8백만원이나, 지출 예정액(8~12월)을 317억 6천 3백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물품지원비 예상 부족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려는 것임.

<표>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19 물품지원비 예상 지출액('21.8~12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21.12월	합계
합 계	6,253	6,823	7,445	8,125	8,867	37,513
저소득가구 지원	1,050	1,100	1,150	1,200	1,250	5,750
물품지원비	5,203	5,723	6,295	6,925	7,617	31,763

- 다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지급 대상을 거주지 또는 격리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으며, '격리지'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설정하여 자치구로 통보('21.6월)하였음. 이처럼 집행부는 현장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기준을 보완하여 일관된 물품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자치구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현황

지급기준		(주민등록지 기준) 외국인 지원	지원방식 비율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시민)	격리장소 주소지 (서울시內 격리중)		물품	현금
(당초)4개구	(당초)21개구	25개구	10%	90%
(변경)0개구	(변경)25개구			

(3)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억원)

○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19 경증환자에 대한 생활지원(구호물품, 식사) 및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년 6월부터 시 센터로 총 15개가 운영 중임. 코로나 19 4차 재확산 여파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임.

<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2021. 8. 17.(화) 18시 기준〉

연번	센터명	소재지	병상수
		계	3,628
1	남산유스호스텔	서울 중구	118
2	태릉선수촌	서울 노원	320
3	서울소방학교	서울 은평	167
4	SK아카데미	경기 용인	204
5	코이카연수원	경기 성남	247
6	한전인재개발원	서울 노원	124
7	서울대기숙사	서울 관악	138

연번	센터명	소재지	병상수
8	삼성물산연수원	경기 용인	209
9	국립국제교육원	경기 성남	179
10	소망교회수양관	경기 광주	250
11	청계센터	서울 종로	239
12	새마을연수원	경기 성남	327
13	연세대우정원	서울 서대문	274
14	시립대국제학사	서울 동대문	520
15	남대문센터	서울 중구	312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확대 운영하기 위한 의료진 인건비, 의료 및 구호물품, 식비, 임차료 등으로 총 100억이 편성되었음.

<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의료진 인건비 등	의료 및 구호물품 등	식 비	임차료	기타 (방역,청소 등)
계		10,000	1,794	698	3,110	2,908	1,490
1	예비 지정 1	5,000	897	349	1,555	1,454	745
2	예비 지정 2	5,000	897	349	1,555	1,454	745

※ 산출 기준 : 최근 개소한 남대문 생치(312병상) 소요 비용 기준

(4) 격리시설 운영 (40억)

○ '격리시설 운영 지원'은 해외입국자 및 국내 접촉자 대상 격리시설 운영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음.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개요
○ 입소대상 : 해외입국자 또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구 분	조 건(1개 이상 충족 필요)
해외입국자	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주소지를 둔 외국인) ②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3촌 이내의 혈족 관계인 자 ③ 격리 해제 이후 서울시에 3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자 등
국내접촉자	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주소지를 둔 외국인) ② 타 지자체 주민 중 관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대중교통 외 수단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이동이 어려운 자 ③ 그 밖에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입소기간 : 최종 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 입소절차 :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 시설 입소 전후 진단검사 실시

○ 입소비용: 국내접촉자 무료, 해외입국자 100천원(1인, 1박 기준, 식비 포함)

- 코로나19 격리시설은 총 4개가 운영 중이었으나, 고시원, 사우나 등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해외 입국자(외국인 유학생 등) 입소 수요 급증에 따라 입소율이 99%(8.8 기준)에 달하고 있어 추가 시설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코로나19 격리시설 입·퇴소 추이

구 분	7.26	7.27	7.28	7.29	7.30	7.31	8.1	8.2	8.3	8.4	8.5	8.6	8.7	8.8
현 입소 인원(명)	495	485	490	476	463	438	445	477	519	589	600	612	781	806
입소율(%)	61.3	60.1	60.7	58.9	57.3	54.3	55.1	59.1	64.3	73.0	74.3	75.8	96.8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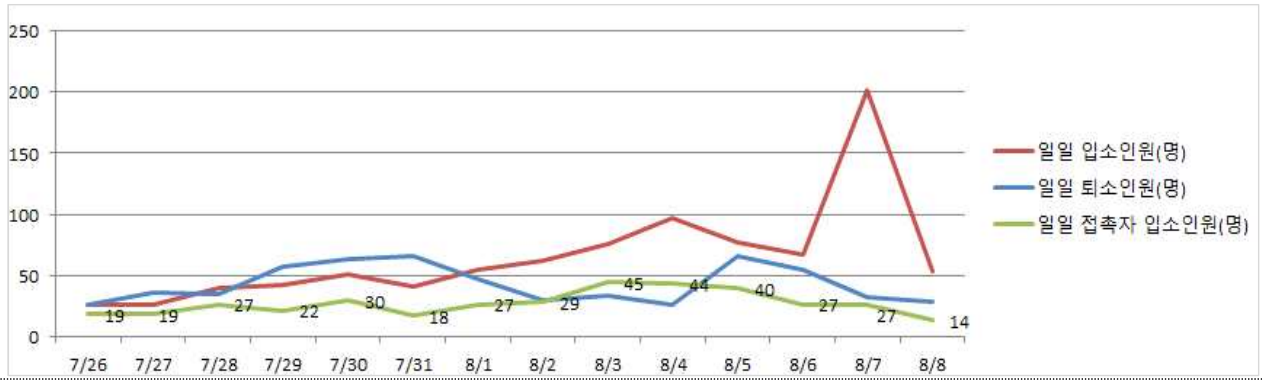

- 이에 8월에 2개소 격리시설을 추가하여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807실 대비 306실이 증가한 총 1,174실이 확보되었음.

<표>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현황

구 분			기존(4개소)	변경(6개소)
계			807실	1,174실
1	호텔스카이파크(동대문1호점)	중 구	254실	254실
2	호텔스카이파크(명동2호점)	중 구	81실	81실
3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명동점)	중 구	248실	248실
4	트레블로지 명동 을지로 호텔	중 구	224실	224실
5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국도	중 구	-	295실
6	명 동 멀 린 호 텔	중 구	-	72실

○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6개소 자가격리 시설에 대한 접촉자 격리비용, 방역비용, 폐기물 등 처리비용 등 예산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42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격리시설 운영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격리시설 운영 예산 산출내역

(6개소/1,174실, 4개월 기준(9~12월)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산출 내역
총 계	4,259,200	
접촉자 등 격리 비용	3,472,000	
- 접촉자 격리시설 이용 비용	3,304,000	▸1,400천원/인 × 590실(50%)/월 × 4개월
- 돌봄인력 격리시설 이용 비용	168,000	▸1,400천원/인 × 30실/월 × 4개월
방역 비용	227,200	
- 시설 정기 방역	48,000	▸400천원/회 × 5주(1개월) × 6개소 × 4개월
- 확진자 격리실 방역	112,000	▸700천원/회 × 40회/월 × 4개월
- 방역 차량 운행	67,200	▸21천원/회 × 800회/월 × 4개월
폐기물 등 처리 비용	560,000	
- 감염성 폐기물 등 처리	560,000	▸140,000천원/월 × 4개월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 및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산출 기초 변동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10억)

○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0억이 편성되었음. 추경안 제출 사유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과 방역비 지원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총 5,370개소(이용시설 4,540개소, 생활시설 830개소)에 방역물품(마스크 등) 장비 및 방역비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비의 경우 시설 당 월 1회 전문업체 활용 방역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임.

<표>복지시설 방역물품 장비 및 방역비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설 구분	소관 부서	어르신 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지역돌봄 복지과
	5,370	996	3,555	427	220	74	98
생활시설	830	531	0	268	0	31	0
이용시설	4,540	465	3,555	159	220	43	98

- 복지시설 방역물품 장비 및 방역비는 7월말 기준 월평균 약 9억 2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로 방역물품 장비 및 방역비를 상반기 지출액 대비 25% 증액(57억 5천 6백만원)하여 연말 예산 부족에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복지시설 방역물품 장비 및 방역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	집행 (7월말 현재)	잔액	비고
11,104	6,450	4,654	1차 추경 2,735백만원 반영

-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돌봄 종사자를 포함한 복지시설 관계자의 불안감이 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탄력적 성격의 적립성 기금임.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 재난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 코로나 19 대응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지원들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삶의 선택권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 ’21년 본예산에는 12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위하여 편성한 응답자 보상품 △1억 3천 3백만원, 자치구 전수조사 추진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비용 △8천 9백만원 등 총 △2억 2천 2백만원을 감액한 9억 8천 7백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제출되었음.

<표>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987,192	(x-) 1,209,660	(x-) △222,468
사무관리비	(x-) 80,000	(x-) 80,000	(x-) 0
공공운영비	(x-) 6,992	(x-) 6,992	(x-) 0
사회복지사업보조	(x-) 700,200	(x-) 700,2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0,000	(x-) 422,468	(x-) △222,468

○ 집행부에서는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수조사 추진연기에 따른 감액이며, 당초 계획되었던 '21년도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차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수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진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구성이 복잡하여 참여율 및 유효응답률이 저조하고, 설문지 개발과 분석의 수행주체가 이원화 되어있어 결과분석에 한계가 있음
-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설문 내용 변경 필요

<표> 연차별 전수조사 추진 현황

구 분		발 달('17년)	지체·뇌병변('18년)	11개 유형('19년)	발 달('20년)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	서울시 거주 18세~64세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서울시 거주 18세~64세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서울시 거주 18세~64세 발달장애인
조사인원		22,980명 중 16,300명	15,086명 중 10,442명	29,250명 중 14,429명	24,905명 (현재 조사결과 입력 중)
설문지 개발	개발 기간	'17. 8월	'18. 5.~9월 (5개월)	'19. 5.~11월 (7개월)	'20. 9.~'20.11월 (3개월)
	방법	직접개발	용역 (인천대 산학협력단)	용역 (인천대 산학협력단)	용역 (인천대 산학협력단)
	참고 사항			11개 유형에 따른 설문지 다양화(4종)로 개발 지연	'20.5월 발주 하였으나, 재공고 등 계약·착수 지연
전수조사	조사 기간	'17. 9.~12. (4개월)	'18. 11.~'19. 2. (4개월)	'19. 12.~'20. 11. (12개월)	'20. 12.~'21. 6. (7개월)
	방법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 조사			
	참고 사항			코로나19로 일부 기간 조사 중단 및 지연	
분석	완료 시점	'18. 9월 완료	'19. 12월 완료	'21. 11월 완료(예정)	'21년(예정)
	수행 기관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 직접 대면을 통해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해야하는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수도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21.8.27. 수도권 기준)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볼 때, 코로나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을 연기하기 보다는 방역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불가피하게 금년 하반기에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월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인권 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동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 시민건강국

1.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1)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함.

<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구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이용대상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민	무증상인 시민이 검사를 받는 곳

○ 서울시는 8월 현재 총 25개 자치구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총 5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 현황[7)]

연번	자치구	운영	장 소	기간
계	25	56	-	-
1	종로	2	종로 구민회관 후문	4.1.~
			탑골공원 삼일문 앞	7.12~
2	중구	2	서울역 광장	4.1.~
			서울광장	7.9.~
3	용산	2	용산역 전면광장	7.21~
			한남동 공영주차장	7.12~
4	성동	2	성동구청(농구장)	4.1.~
			성수구두테마공원 (성수역 4번출구)	7.12~
5	광진	2	중곡보건지소	4.1.~
			자양보건지소	7.12~
6	동대문	3	청량리역 광장	4.1.~
			장안근린공원	7.14~
			외대앞 역 광장	7.26~
7	중랑	3	면목역 광장 (3번출구)	4.1.~
			망우역광장(1번출구)	7.12~
			망우저류조공원 (드라이브 스루)	8.4~
8	성북	2	성북구청 바람마당	4.1.~
			길음 어울림마당 (길음역 5번출구앞)	7.14~
9	강 북	2	강북구민운동장	4.1.~
			시범공영주차장 (강북구 수유동 190-11)	7.13.~ 7.19.~
10	도봉	2	도봉구민회관	4.1.~
			창동역 1번 출구	7.12~
11	노원	2	노원구청 주차장	4.1.~
			노원구민의전당 (노원구 동일로 1229)	7.12~
12	은평	3	은평평화공원 옆 (역촌역 4번출구)	5.3.~ 7.19.~
			구파발 인공폭포 (구파발역 1번출구)	7.12~
			서울혁신파크 (드라이브스루)	8.2~
13	서대문	2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7.17~
			홍제견인 차량보관소	7.15~
14	마포	2	서강대역사 광장	7.22.~ 8.31.
			홍익문화공원	7.12~

7) 서울시 코로나19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2553 <2021.8.24. 참조>

연번	자치구	운영	장 소	기간
15	양천	2	양천구의회 주차장	4.1.~
			신월문화체육센터	7.12~
16	강서	2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 1센터	4.1.~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 2센터	7.12~
17	구로	2	구로역 광장	4.1.~
			오류동역 광장	7.14.~
18	금천	2	필승아파트 단지 내	4.1.~
			독산보건분소	7.15~
19	영등포	2	도림동 배드민턴체육관	7.12~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 마당	7.12~
20	동작	2	사당 문화회관 (사당권역)	7.10.~
			동작구청 주차장	7.12~
21	관악	2	신림 체육센터	4.1.~
			낙성대공원	7.13~
22	서초	5	고속터미널역 1번출구	7.7.~
			강남역 9~10번출구	7.12.~
			사당역 14번출구	
			서초종합체육센터 드라이브스루 운영 (양재대로12길 73-48)	
			심산기념문화센터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운영 (사평대로 55)	7.19.~
23	강남	2	삼성역6번출구 (코엑스)	4.1.~
			세곡동 방죽공원 (율현동 254-3)	
24	송파	2	올림픽공원	4.1.~
			평화의문 광장	7.19.~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문정동 368 일대)	7.12.~
25	강동	2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암사동 193)	4.1.~
				7.19~
			온조대왕옆 공영주차장 (동남로 926)	7.12.~
				7.19.~

○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총 298명 (개소당 3~9명)의 의료인력과 총 151명(개소당 최대 8명)의 군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운영 및 폭염대비 인력 근무 현황

(단위 : 명)

자치구		현재 근무(배치) 인력				
		합계	의료 인력	군인력	기간제 근로자	직원 차출
합 계		1,157	298	151	281	427
54개소	기 운 영 (2 6 개 소)	525	154	66	133	172
	확 대 운 영 (2 8 개 소)	632	144	85	148	255

○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시민 “누구나” 검사를 쉽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대비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

○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는 2020년 총 362,445건을 검사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2,853,942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7월 한 달간 서울시 55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총 81만 60건의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0년 서울시 코로나19 검사건수

(단위 : 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12.14~)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1,104,061	362,445	438,858
평균	92,005	20,136	36,572

<표> 2021년 서울시 코로나19 검사건수 (7월말 기준)

(단위 : 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3,250,719	2,835,942	735,208
평균	464,388	13,377	105,030
전년대비	5배↑	-	2.9배↑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은 하절기 폭염에 따른 검사대상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절기 무더위 폭염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업무를 위해 전액 국비편성되었음.(중앙방역대책본부-16086호. '21.8.4)

○ 특히 지난 7월초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과 폭염이 겹치면서 인력들의 소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7월에는 서울시내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파견인력이 폭염으로 인해 탈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8)]

○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예산은 방대본 자체예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시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대비 운영비 지원 현황

(21.7.30.기준, 단위 : 천원)

자치구	합계	市 특별교부금 (21.7.10.)	市 특별교부금 (21.7.16.)	행안부 특별교부세 (21.7.21.)
합 계	**3,764,037**	**2,540,037**	**429,000**	**795,000**

8) 뉴스1 (2021.07.15.). "폭염에 검사량 폭증....관악구 선별검사소 공무원 쓰러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523018096806)

자치구	합계	市 특별교부금 (21.7.10.)	市 특별교부금 (21.7.16.)	행안부 특별교부세 (21.7.21.)
종로구	26,736	10,736	16,000	30,000
중구	392,110	346,110	16,000	30,000
용산구	61,379	15,379	16,000	30,000
성동구	114,056	68,056	16,000	30,000
광진구	71,254	25,254	16,000	30,000
동대문구	46,000	-	16,000	30,000
중랑구	123,368	77,368	16,000	30,000
성북구	130,000	84,000	16,000	30,000
강북구	196,803	150,803	16,000	30,000
도봉구	132,216	86,216	16,000	30,000
노원구	105,000	59,000	16,000	30,000
은평구	166,795	120,795	16,000	30,000
서대문구	62,753	16,753	16,000	30,000
마포구	165,156	119,156	16,000	30,000
양천구	174,467	128,467	16,000	30,000
강서구	190,600	144,600	16,000	30,000
구로구	216,466	170,466	16,000	30,000
금천구	167,551	121,551	16,000	30,000
영등포구	170,552	124,552	16,000	30,000
동작구	141,442	95,442	16,000	30,000
관악구	93,808	47,808	16,000	30,000
서초구	336,704	206,704	55,000	75,000
강남구	38,629	2,629	6,000	30,000
송파구	201,150	155,150	16,000	30,000
강동구	209,042	163,042	16,000	30,000

○ 폭염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를 대상으로 폭염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억 4천 5백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해당 예산을 활용해 냉방기, 그늘막 텐트, 개인냉방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9)]

○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하절기를 대비해 「하절기 대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침」을 배부한 바 있으며, 해당 지침에는 폭염대비 현장근무자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제2차 추경을 통해 폭염대책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배부되며, 기본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염대책운영비로 기지출한 금액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 임시선별검사소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국고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집행 기준[10)]

구 분		집행기준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비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의 경상 경비		
시설 설치	컨테이너	- 컨테이너 설치비, 임대비, 운영비 등
	텐트/천막	- 텐트, 천막, 그늘막 설치비, 임대비, 운영비 등
	시설장비 설치공사비	- 설치물 수리비, 공사비 등
	냉난방기	- 냉난방기(냉방기, 냉풍기, 선풍기 등) 설치비, 임대비 등
	냉난방기 운영	- 냉난방기 운영비(공공요금) 등
기기·장비	각종 장비 구입/대여	- 개인보호구, 냉각조끼, 냉각조끼용 냉장고, 냉동고, 쿨스카프, 부채,양산, 냉온수기, 음료, 선캡 등
운영·홍보	그 외 운영경비	- 긴팔가운4종 세트 등 검체채취에 필요한 물품 등

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07.20.).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긴급 지원”.
10)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8.).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계획 및 집행지침

<표>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계	(x1,188,000) 1,188,000	(x-) -	(x1,188,000) 1,188,000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신규 증액(전액 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	(x1,188,000) 1,188,000	(x-) -	(x1,188,000) 1,188,000	○임시선별검사소(56개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 임시선별 52개소×21,000천원 = 1,092,000천원 - 드라이브 스루 4개소×24,000천원 = 96,000천원

○ 임시선별검사소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운영된 것으로 수도권 2.5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도입된 바 있음. 당시 방대본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이 조기확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운영 기간 연장이 논의되고,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11)]

○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는 물론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근무인력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폭염대책 운영비 뿐만 아니라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금 등 검사인력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와 판단을 통한 확진자 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서울시에서도 국가 지원과 별도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환경개선 등 종사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하겠음.

---

11) 연합뉴스(2020.12.26.). “수도권 임시검사소서 1천140명 조기 발견…”운영기간 연장 논의“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6020751530

2)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건강국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제2항[12]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제24조, 제26조[13]를 근거로 2012년 최초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운영해왔음.

○ 2021년 시민건강국에서는 해당사업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사업자 무응찰을 사유로 사업비 전액에 대한 감액을 시행함.

○ 해당사업은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과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12) **「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분쟁 조정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의료 관련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옴부즈만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5. 의약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보건의료·사회학·생명윤리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7. 시 보건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8. 그 밖에 의료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4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
3.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환자권익 보호사업 등) ① 시장은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환자 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 환자권익 침해 관련 상담 및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 분석
3. 환자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는 15~20명의 시민단체, 의약단체, 전문가, 법조인, 서울시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의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하게 됨.
- 환자권익보호사업은 운영사업자 공모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자고충 상담을 시행하고, 환자권리보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환자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음.

○ 시민건강국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운영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무응찰되었으며, 이를 사유로 제2차 추경에 감액편성을 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해당 사업 자체를 수행하지 않을 계획에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최근 3년 성과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과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됨.

- 사업 내용에는 환자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환자권리 길라잡이」발간을 통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 권리 침해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안내, 환자권익 침해관련 콜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실적 (2018년 ~ 2020년)

사업시행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수행단체(기관)	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사)소비자시민모임(대표:김자혜)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안기종)
예산(천원)	143,954천원	151,080천원	106,380천원
사업기간	2018.1.1. ~ 2018.12.31.	2019.2.20. ~ 2019.12.31.	2020.6.17. ~ 2020.12.31.
환자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1. 기획조사 및 환자권리 포럼 개최 : 1회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1. 기획조사 및 환자권리 포럼 개최 : 1회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개선방안 2.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조사	1. 기획조사 및 환자권리 포럼 개최 : 1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환자권익 침해관련 상담 및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환자고충 상담콜센터 운영(1899-9350)** - 상담실적 : 1,706건	**환자고충 상담콜센터 운영(1899-9728)** - 상담실적 : 393건	**환자고충 상담콜센터 미운영**
환자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1. 환자권리교실(토마토) : 4회 2.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행**	1. 소비자 대면 교육 : 4회 2. 의료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사례집 및 교육자료 발간	1. 시민대상 비대면 교육(환자권리교실 토마토) : 2회 '환자권리TV'를 통해 배포 2. '**환자권리TV**' 채널 운영 : **12편 제작·배포** 3.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행 : 1,000부**
	1. 환자정보 카드뉴스 : 8회	1. 캠페인 실시 : 1회	1. 환자정보 카드뉴스 : **7편 제작·발행**

사업시행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 인스타그램 홍보 3. 소비자리포트 : 8회 (1회 4,000명) 4. 카드뉴스 E-레터 : 5회 (1회 9,000명 발송)	2. 온라인 홍보 : 공식 블러그, 페이스북 운영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자문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그 밖에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선택을 하거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완벽히 질 수 없다는 특성이 존재함.[14)]

○ 보건복지부에서도 2020년부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 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있음.

- 협의체에서는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공공성,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시민건강국에서는 사업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사유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활용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3)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 해당 사업은 가락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청사 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가락시장 내 위치한 119안전센터와 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예산편성 및 추진되며, 가락119안전센터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예산편성 및 추진되고 있음.

○ 청사이전에 관한 논의는 2009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9

14) 정영훈(2017). 보건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비교. 보건행정학회지. 27(1). 보건행정학회.

년간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가락119 안전센터와 복합개발 하기로 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복합개발에 따른 원활한 고유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추가제공하되, 복합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각각 확보하고, 사전절차 이행은 소방본부가 주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현실화, 건설관련 적용 법규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며 사업계획이 1회 변경된 바 있음.

〈가락119 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사업개요〉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 규모 : 지상6층 / 지하 1층, 연면적 3,552.5㎡/ 부지면적 850㎡

○ 기간 : 2019.3월 ~ 2023. 9월

○ 사업비 : 13,972백만원 (가락센터 3,542백만원, 농수산물검사소 10,430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면적	3,434㎡	3,552.5㎡	118.5㎡ 증가
층수	지상7층/지하1층	지상6층/지하1층	· 7층 285㎡ 삭제 · 지하층 403.5㎡ 증가
예산	11,157백만원	13,972백만원	2,813백만원 증가

○ 해당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한 공공건축 사전 적정성검토 결과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사고이월을 실시한 바 있음.

<표>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2020년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청사시설 유지관리	435,422	45,240	390,182

○ 2021년도 제2차 추경에서 집행부는 합동청사 건립 설계용역의 일정 조정에 따라 예산 집행시기가 순연되면서 해당 예산을 감액 후 재확보 하겠다는 계획에 있음.

<표>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제2차 추경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계	33,176	64,560	△31,384	합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일정 조정에 따라 예산 집행 시기가 순연되어 감액 후 재확보 예정
시설비	33,176	64,560	△31,384	○합동청사 신축 사업비 = △31,384천원

○ 해당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변경계획이 1번 세워진 바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가. 복지정책실

1.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15]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1년 수입·지출 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0,743	12,336	1,593
이자수입(공공예금)	197	197	0
융자금원리금회수	2,038	2,038	0
예치금회수	8,255	9,848	1,593
예탁금이자수입	253	253	0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0,743	12,336	1,593
사회복지사업보조	700	700	0
민간융자금	4,800	4,800	0
일반운영비	41	41	0
예 치 금	5,202	6,795	1,593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16]

---

1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의 증가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가 15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 역시 동일 금액이 증가한 바, 당초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변경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2. 노인복지계정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17]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1년 수입·지출 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321	1,980	659
예탁금회수	510	510	-
예치금회수	246	905	659
이 자 수 입	295	295	-
기 타 수 입	269	269	-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321	1,980	659
비 융 자 사 업	1,177	1,177	-
융 자 성 사 업	100	100	-
기 본 경 비	3	3	-
예 치 금	40	699	659

1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의 증가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가 6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 역시 동일 금액이 증가한 바, 당초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변경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5 결론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고용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심의·의결되었음. 금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한시지원을 위한 예산 36억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액(149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169억원), 자활근로사업(31억원)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음.

○ 그 밖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604억원, 복지정책실)과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 (31억원, 시민건강국) 외에도 시민들의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금(209억원, 시민건강국)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시비분을 매칭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감액되었음. 감액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보조금내시가 감소하여 줄어든 사업으로 나타남.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내시금액의 감액으로 인해 세출 시비가 같이 감액된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재정고권을 지키기 위해 2022년 예산편성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이 외에 코로나 19와 관계 없는 사업의 사업 계획변경이나 사업진행이 미진한 점으로 인해 감액 제출한 사업들의 경우 충분한 고려를 통해 2022년 본예산을 편성·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